
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도해명자료</h1>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<b>보다 나은 정부</b>
	배포일시	2019. 7. 1.(월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자동차정책과	담당 자	·과장 윤진환, 기술서기관 김현진, 사무관 유연형 ·☎ (044) 201-3835, 3838, 3843
보도 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## 자기인증제 취지를 감안할 때 자발적 리콜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며, 미국·독일 등 해외 선진국들도 결함에 대한 기준은 우리나라와 유사합니다.

- '11년 시정명령 위반이 아닌 자발적 리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토록 「자동차관리법」이 개정된 것은
  - 제작사에게 높은 자율성을 부여한 자기인증제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국토부장관의 시정명령이 아닌 자발적 리콜의무 위반 시 처벌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  - 자발적 리콜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,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리콜을 하지 않아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  - 미국의 경우에도 자동차리콜관련 법령(US code 30170)에서 결함에 대해 교통부장관을 오도할 의도로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상 벌칙으로 벌금 또는 15년이하 징역을 부과하고 있습니다.
- 리콜을 실시해야 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, 자동차 몇 대가 이상이 생겨야 리콜을 한다는 등 정량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.

- 결함요건을 정량적으로 규정하는 경우, 정량적인 기준 충족시까지 제작사가 리콜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등 안전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,
- 이로 인해 다카다 에어백의 경우처럼 외국에서는 리콜을 실시하나, 국내에서는 정량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리콜을 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동아일보, 7.1) >

◆ “황당한 자동차 리콜법”

- 자발적 리콜 위반시 형사처벌토록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
- 결함 기준 등 처벌규정 모호해 헌법위반 소지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
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현진 서기관, 유연형 사무관  
 (☎ 044-201-3838, 38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